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發議年月日：1997. 10. .

發議者：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長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7年 7月 28日 金重緯議員의 156人이 發議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과 1997年 8月 26日 朴相千·李廷武議員의 121人이 發議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을 第184會國會(臨時會) 第3次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1997. 8. 28)에서 第1小委員會에 回附하였음.

나. 第1小委員會는 이상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1997年 8月 29日부터 1997年 9月 12日까지 11次에 걸친 審査活動을 하고, 그 결과를 第5次委員會(1997. 9.18)에 보고하였으며, 委員會는 小委員會의 未合意事項에 대한 政策的 결정을 위하여 이를 特別委員會委員長과 與·野 3黨總務의 會談에 붙임.

다. 1997年 9月 24日부터 10月 31日까지 23次에 걸친 會談에서 이상 2件의 法案을 統合·절충하여 마련한 與·野 合意單一案을 第6次 委員會(1997. 10. 31)에서 우리 委員會案으로 받아들여 委

員會 代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2件의 原案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

2. 代案의 提案理由

돈이 많이 드는 非效率的인 選舉運動方法을 排除하고, 돈이 적게 들면서도 效率的인 選舉運動方法을 확대하며, 選舉公營制를 확대하고, 選舉運動에 있어 公正性을 제고하며, 기타 그동안 運營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米비점을 보완하여 이번 大統領選舉를 계기로 새로운 選舉風土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政治文化의 先進化를 이룩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高費用政治構造改革을 위하여

-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이용을 금지함(안 제89조제1항).
- (2) 선거구내의 각종행사에 금품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도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함(안 제117조의2).
-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는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그 회수도 현행 구·시·군마다 3회 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 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함(안 제77조제1항).

-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행 전단형 2종, 명함형, 책자형 각 1종 등 4종의 소형인쇄물을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축소하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이를 폐지함(안 제66조제1항).
- (5)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소속당원에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류를 현행 전단형 및 책자형 각 2종이내에서 전단형은 폐지하고 책자형도 1종으로 축소함(안 제138조제1항).
- (6) 선거운동방법중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에 의한 전화는 이를 폐지함(안 제109조제1항)
- (7) 정강·정책의 신문광고회수를 현행 임기만료시 80회이내, 대통령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시 30회이내에서 각각 50회이내 및 20회이내로 축소함(안 제137조제1항).
- (8)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자동차와 확장장치를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2대·2조에서 1대·1조로 축소함(안 제79조제3항).
-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활동상황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0항).
- (10)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함(안 제135조제3항)
- (11)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함(안 제105조제2항).

(12) 대통령선거에 있어 표찰·수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에서 선거관계자로 축소함(안 제68조제1항).

나. 選舉公營制 확대를 위하여

(1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신문광고회수를 현행 150회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하되, 10%이상 득표자에 대하여 현행은 50회만 국고보전하던 것을 70회 모두 국고보전토록 함(안 제69조제1항).

(1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수막의 수량을 현행 읍·면·동수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수 이내에서 구·시·군마다 3매이내로 축소하되, 10% 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토록 함(안 제67조제1항).

(15)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작성·배부하던 소형인쇄물을 후보자가 작성하되 선관위가 배부하도록 함(안 제68조제6항).

(16)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10%이상 득표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선거후 국고보전토록 함(안 제135조제5항).

다. 選舉運動의 公正性確保를 위하여

(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의무

규정을 강화함(안 제108조제3항 및 제4항).

- (18)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을 명시함(안 제272조의2).
- (19)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현행 후보자에 국한하던 것을 후보자 이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까지 확대함(안 제250조제1항).
- (20)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등의 지급은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135조제4항).
- (2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로 통일하고,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이상의 공개행사에의 의례적인 방문이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직무수행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복구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등 금지기간중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6조제2항).

라. 放送媒體를 이용한 選舉運動方法의 活性化와 그 公正性提高를 위하여

- (22) 「대담」과 「토론」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81조제2항).
- (23)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전 60일(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82조의2).

- (24)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설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25)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의2).
- (26)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언론기관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2조제1항).
- (27)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회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7회 이내에서 각 11회 이내로 확대함(안 제71조제1항).
- (28)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의 방송광고회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 20회이내에서 30회이내로 확대하고, 경력방송의 회수도 현행 KBS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상에서 각 8회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
- (29)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체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82조).
- (30)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광고를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조정토록 함(안 제70조제5

항).

마. 기타 制度改善事項과 관련하여

- (31)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이미 후임대통령의 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인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부터 임기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3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토록 함(안 제150조제4항).
- (33)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출마시 사퇴기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 (34) 선거법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토록 함(안 제18조제3항).
- (35)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56조제1항).
- (36) 선거운동기간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등에 관한 비방의 경우에는 각급선관위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3).

- (37)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유형을 제112조에서 통합·정리하고, 음식물의 통상적인 범위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2조 제2항 및 제141조 내지 제143조).
- (38)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거하는 자에 대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 (39) 선전벽보등 자동차부착 선전물에 대한 중앙선거관위의 검인제도를 폐지함(안 제79조제6항 및 제91조제4항).
- (40) 선거용자동차나 확성장치등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가액 또는 선거관위가 공고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토록 함(안 제129조제3항).
- (41) 선거운동등을 위한 신문광고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중 “候補者의 政見에”를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로 한다.

第8條의2 내지 第8條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放送法 第11條(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舉放送의 公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選舉日전 120日까지 選舉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權利救濟 기타 選舉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公表하여야 한다.

⑤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是正 및 制裁措置를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是正 및 制裁措置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

⑦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條의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無料로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 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내용·크기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の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

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第3項 및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이미 後任大統領의 選舉가 실시되어 當選人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當選人의 任期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부터 開始된다

第1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2項의 選舉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第38條第3項중 “者중 거동할 수 없는 者와”를 “者로서 거동할 수 없

는 者나 不在者投票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長期寄居하는 者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와”로 하고, “療養所의”를 “療養所등의”로 한다.

第53條第1項중 “全國區國會議員選舉와”를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舉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選舉日 전 60日, 全國區國會議員選舉와”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를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로 한다.

第56條第1項第1號중 “3億원”을 “5億원”으로 한다.

第6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數量은 종류별로 각각 大統領選舉에 있어서의 傳單型 小型印刷物 및 名啣型 小型印刷物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名啣型 小型印刷物은”을 “數量은 名啣型 小型印刷物은”으로, “大統領選舉·地域區國會議員選舉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있어서의 책자형 小型印刷物은”을 “책자형 小型印刷物은”으로, “數이내로 한다”를 “數이내로,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舉區안의 世帶數에 상당하는 數이내로 한다”로 한다.

1. 大統領選舉

傳單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型印刷物 각 1種

第66條第6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名啣型 小型印刷物의 배부에 있어서는 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를 “名啣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배부하되,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각 2部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로 한다.

1. 大統領選舉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日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인과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되, 第154條(不在者申告인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1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投票案内文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選舉人名簿 확정결과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이를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第66條第9項중 “책자형 小型印刷物(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한한다)에”를 “책자형 小型印刷物과 傳單型 小型印刷物에”로,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책자형 小型印刷物(大統領 選舉에 한한다) 및 名啣型 小型印刷物에”를 “名啣型 小型印刷物에”로, ““ 책자형 小型印刷物” ”을 “ “책자형 小型印刷物 및 傳單型 小型印刷物” ”로 한다.

第67條第1項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 내지 第4號를 第3號 내지 第5號로 하며, 同條同項 第1號중 “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를 “市·道知事選舉”로 하여 이를 第2號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大統領選舉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 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마다 3枚이 내

③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懸垂幕의 製作·揭示費用은 당해 候補者가 부담하되, 候補者가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第1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國家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서 選舉日후 補填한다.

第68條第1項을 削除하고, 同條第2項중 “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候補者”를 “候補者”로, “候補者の 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腕章・어깨띠 또는 標札을”을 “候補者の 사진・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標識板・標札・手旗・腕章・어깨띠・마스코트 기타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小品을”로 하며, 同條第3項중 “第1項 및 第2項의”를 “第2項의”로, “마스코트 의”를 “마스코트등의”로 한다.

第69條第1項중 “政見”을 “政見,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舉에 한한다)”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150회이내”를 “70회이내”로 하며, 同條第7項중 “때에는 그 費用중 50회의 費用에 한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를 “때에는 國家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第70條第1項중 “放送施設을”을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20회이내”를 “30회이내”로 하며, 同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7項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를 “國家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廣告를 함에 있어서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申請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放送日時の 調整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1條第1項중 “放送施設을”을 “放送施設(放送법에 의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7회이내”를 “11회이내”로 하며, 同條第9項중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를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10項중 “地方自治團體가”를 “地方自治團體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서”로 하며, 同條第11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을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으로, “第1項의”를 “放送법에 의한”으로 한다.

第72條第1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을”을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로 한다.

第73條第2項중 “5회이상으로”를 “8회이상으로”로 한다.

第74條第1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을”을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로 한다.

第75條第4項중 “第64條(宣傳壁報)第8項의”를 “第64條(宣傳壁報)第9項

의”로 한다.

第77條第1項第1號중 “5時間이내에서”를 “5時間이내에서 市·道마다 2回이내와”로, “3回이내”를 “1回. 이 경우 公開施設에서의 屋內(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場所를 말한다)集會에 한한다.”로 하고, 同條第6項중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11項중 “標識를 하여야 하고, 확성기는 演說會를 개최하는 場所안에만 設置하여야 하며, 大統領選舉의 候補者가 演說을 하는 演說會場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設置할 수 있다.”를 “標識와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宣傳物을 設置·게시할 수 있으며, 大統領選舉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演說會를 개최하는 場所밖에는 확성기와 錄音·錄畫器를 設置할 수 없다.”로 하고, 同條第12項중 “200枚이내의”를 “200枚(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區·市·郡連絡所마다 100枚)이내의”로 한다.

第79條第3項第1號중 “候補者마다 1대·1組, 區·市·郡選舉連絡所마다 2대·2組”를 “候補者와 區·市·郡選舉連絡所마다 각 1대·각 1組”로 하고, 同條 第6項중 “管轄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은 第64條(宣傳壁報)의”를 “第64條(宣傳壁報)의”로 하며, 同條第10項중 “腕章

· 標札 기타의 표시물을 두르거나 지닐 수 있다.”를 “錄音器 또는 錄畫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黨歌 등 政黨 또는 候補者를 홍보하는 내용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12項중 “檢印 기타”를 “檢印, 錄畫器의 規格 기타”로 한다.

第81條第1項중 “및 對談·討論者”를 “와 對談者 또는 討論者”로, “政見등을”을 “政見 기타사항을”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8項중 “書式 및 公正한 개최를 위한 사항”을 “書式”으로 한다.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第82條第1項중 “라디오放送局”을 “라디오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으로 하고, 同條同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市·道知事選舉의 경우에는 第59條(選舉運動期間)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前日까

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와 對談을 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第82條의2第1項중 “出資한 放送法人 및 그 法人이 出資한”을 “出資한”으로, “말한다)는”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공동하여”로, “選舉期間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候補者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중에서 1人 또는 數人을”로, “政見등을”을 “政見 기타사항을”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여 報道한다.”를 “對談·討論會를 3회이상 개최하여 報道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同項 但書を 削除하며,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選舉日전 60日까지 大統領選舉放送討論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討論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討論委員會는 放送法人·放送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議席을 가진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11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討論委員會의 委員을 추천하는 放送法人·放送學界·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公營放送社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④討論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⑤討論委員會는 초청 候補者와 司會者·質問者의 선정, 對談·討論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決定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⑥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開催日前日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여야 한다.

⑦公營放送社가 아닌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放送施設을 말한다]는 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中繼放送할 수 있다.

⑧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2項·第6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第82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運動) ①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選舉運動期間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揭示板·資料室등 情報貯藏裝置에 選舉運動을 위한 내용의 情報를 게시하여 選舉區民이 閱覽하게 하거나 對話房·討論室등에 참여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摘示하여 이들을 誹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情報貯藏裝置에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

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提供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事業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提供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요청을 받은 電氣通信事業者와 해당 개인용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 이내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86條第1項第1號중 “候補者의”를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로 하고, 同條第2項 本文중 “地方自治團體의 長은”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로 하며, 同條同項 後段을 削除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를 “地方自治團體의”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지 所屬政黨의”를 “所屬政黨의”로 하며,

同條同項第3號중 “選舉日 전 60日부터 選舉日까지 中央黨 단위의 創黨大會”를 “創黨大會”로, “候補者가 되는”을 “候補者가 되는 경우와 黨員으로서 所屬政黨이 黨員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政黨의 地區黨 단위 이상의 公開行事に 儀禮적으로 방문하는”으로 하고, 同條同項 第4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各目的의 1을 제외하고는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敎養講座, 事業說明會, 公聽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 가. 法令·條例에 근거한 地方自治團體 본연의 職務遂行을 위한 행위
 - 나. 特定日·特定時期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天災·地變 기타 災害의 救護·復舊를 위한 행위
 - 라. 職業輔導敎育 또는 有償으로 실시하는 敎養講座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 마.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바. 가目 내지 마目に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5. 統·里·班長의 會議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天災·地變 기타 災害가 있거나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7條중 “代表者의”를 “代表의”로 한다.

第89條第1項중 “後援會 또는 휴게소”를 “後援會·휴게소 또는 研究所”로, “機關·團體 또는 施設을 設立하거나”를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設立 또는”으로, “黨支部 또는 地區黨의”를 “黨支部·地區黨 또는 區·市·郡黨連絡所의”로 하고, 同條第2項중 “機關·團體 또는 施設은”을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으로, “第6條의5(集會에 의한 募金)”을 “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으로 한다.

第8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에 있어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研究所·同友會·鄉友會·山岳會·早起蹴球會, 政黨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하거나 設置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舉運動이외의 目的으로 設立되거나 設置된 團體 기타의 組織이나 그 構成員에게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金品·響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第91條第4項중 “관계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은 第64條(宣傳壁報)

의”를 “다음 각號에 의한 數이내에서 管轄選舉管理委員會가 교부한 標識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第64條(宣傳壁報)의”로, “다음 각號에 의한 數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를 “부착하여”로 한다.

第93條第1項중 “살포”를 “살포·상영”으로 한다.

第98條중 “綜合有線放送局 및”을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과”로 한다.

第105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누구든지 第68條(標札·手旗등)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第108條第1項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고, 同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의 전체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頼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舉의 選舉日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第109條의 題目“(電報의 사용금지등)”을“(書信·電報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로 하고, 同條第1項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權者에게 電報나 모사전송”을 “選舉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으로, “電話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自筆書信(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에”를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로 한다.

第110條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2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項중 “第3項의”를 “第4項

의”로 하여 이를 第5項으로, 第3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政黨活動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儀禮的인 금액범위안에서 祝儀金品 또는 賻儀金品을 제공하는 행위
2. 獎學財團 또는 獎學基金이 選舉日 2年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獎學金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獎學金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히거나 候補者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과 第141條(黨員團合大會의 제한)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會 및 黨員教育 기타 所屬黨員만을 對象으로 하는 黨員集會에서 參席黨員등에게 政黨의 經費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행위(膳物이나 記念品을 제외한다)
 - 가. 教材 기타 政黨의 弘報印刷物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싼 값의 政黨의 배지나 상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위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에 있어 그 開催場所가 大衆交通手段이 없거나 交通이 불편한 場所로서 移動을 위하여 參席黨員에게 交通便利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다과·떡·김밥·음료(酒類를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飲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 또는 政黨의 區·市·郡黨連絡所이상의 黨部の 事務所를 방문하는 者

나.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상의 행위로써 개최하는 議政活動報告會등 集會에 참석한 者

다. 第1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會에 참석한 所屬黨員

라.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者會議와 地區黨의 代表者가 개최하는 黨職者會議(區·市·郡黨連絡所의 部長級이상의 幹部와 邑·面·洞의 男·女責任者級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한다)에 참석한 黨職者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食事類의 飲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와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나. 政黨의 地區黨代表者(候補者를 제외한다)가 管轄區域안의 地域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의 創黨大會등에 參席한 黨員과 來賓. 이 경우 酒類는 제외한다.

라.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6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를 개최한 때에 그 集會에 참석하여 金品을 기부한 者. 다만, 選舉期間중에는 다과류의 飲食物에 한한다.

6. 政黨의 中央黨이 第1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者會議 參席對象者와 有給事務職員을 대상으로 행하는 黨員教育에서 政黨의 經費로 參席黨員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宿食 또는 實費의 旅費나 交通便宜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 또는 救護的·慈善的 행위나 통상적인 政黨活動으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③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飲食物”이라 함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禮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記念品 또는 膳物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第11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 ①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政黨의 地區黨 代表者·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는 選舉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選舉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고가 있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野遊會·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金品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冠婚喪祭儀式 기타 慶弔事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祝儀·賻儀金品을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第1項의 행위를 약속·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親族, 政黨의 黨職者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안에서의 행위와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0條第7號중 “電信料·自筆書信郵送料등의”를 “電信料등의”로 하고, 同條第8號중 “같은條같은項第2號 및 第5號의”를 “같은條 같은

項第4號 項目 및 第5號 項目의”로 한다.

第129條第3項중 “그 기재방법은”을 “그 기재방법 및 第3項 前段의 價額算定方法은”으로 하여 이를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會計責任者는 자동차(選舉運動用자동차를 말한다), 擴聲裝置, 印刷物, 施設物 기타 裝備·物品을 選舉運動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去來價格 또는 賃借價格에 상당하는 價額을 選舉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填對象이 되는 印刷物·施設物 기타 物品에 대하여는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金額을 그 價額으로 본다.

第135條第3項중 “기타 명목여하를”을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등 명목여하를”로 하고, 同條에 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事務關係者에게 手當·實費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事務長등이 지정한 金融機關의 預金計座에 入金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大統領選舉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事務長등의 手當은 당해 候補者(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부담하되, 候補者가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第1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國家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서 選舉日후 補填한다.

第137條第1項중 “黨費募金”을 “黨費募金,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舉에 한한다)”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80回이내”를 “50回이내”로 하며, 同條同項第2號중 “30回이내”를 “20回이내”로 한다.

第13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數量은 종류별로”를 “數量은”으로 한다.

①政黨이 選舉期間중에 候補者를 推薦한 選舉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 政綱·政策弘報物은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한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으로 한다.

第140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41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142條第3項 및 第4項을 削除하고, 同條第5項중 “申告書式과 第4項의 地區黨代表者와 함께 다니는 者 및 통상적인 범위안에서의 제공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申告書式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第143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選舉期間開始日前日까지”를 “寄附行爲制限期間開始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前日까지”로, “地區黨(連絡所를 포함한다)”을 “地區黨(區·市·郡黨連絡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第150條의 題目 “(投票用紙)”을 “(投票用紙의 候補者의 掲載順位등)”으로 하고, 同條第4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 및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와 동시에 실시하는 選舉에 있어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의 경우에는 多數議席順에 의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政黨별로 全國的으로 통일된 記號를 부여한다.

第154條第1項중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第2號의”를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의”로 한다.

第230條第1項第4號중 “기타 명목여하를”을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등 명목여하를”로 한다.

第240條第3項중 “傳單型 小型印刷物(大統領選舉를 제외한다)이나 책자형 小型印刷物(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한한다)”를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小型印刷物”로 한다.

第250條第1項중 “候補者의”를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姊妹의”로 한다.

第255條第1項第8號중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에서”를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8項에서”로 하고, 同條同項第13號중 “設立하거나 設置한 者”를 “設立·設置하거나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한 者”로 하며, 同條同項第14號 내지 第18號를 각각 第15號 내지 第19號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1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同項第16號(중전의 第15號)중 “第105條(行列등의 금지)의”를 “第105條(行列등의 금지)第1項

의”로, “者”를 “者,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로 하며, 同條同項第19號(중전의 第18號)중 “第109條(電報의 사용금지등)第1項”을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第1項”으로, “電氣通信의”를 “書信·電報·모사전송·電話 기타 電氣通信의”로 하며, 同條第2項第2號중 “第68條(標札·手旗등)第1項 또는 第2項의”를 “第68條(標札·手旗등)第2項의”로 하고, 同條同項第5號중 “게시하거나”를 “게시·상영하거나”로 한다.

14.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舉運動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設置한 者,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響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者 또는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第256條第1項第1號 나目중 “演說會場の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開催場所를 벗어나 확성기를”을 “標識 또는 宣傳物을 設置·게시하거나 開催場所밖에 확성기, 錄音·錄畫器를”로 하고, 同條同項同號 라目내지 타目を 바目내지 하目으로, 다目を 라目으로 하며, 同條同項同號에 다目 및 마目を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同項同號 과目(중전의 카目)중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게 한 者”를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
道하거나 하게 한 者와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舉
의 選舉日후 6月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者”로 한다.

다.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政
黨 또는 候補者를 弘報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
屬政黨의 政綱·정책,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마.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運動)第5項의 規定에 위반
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256條第3項第5號중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第1號 本文(같은 條 같
은 項 第2號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小
型印刷物을”을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啣型 小型印刷物을”로 하고, 同條同項第9號중 “아니한 者”를 “아
니하거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첩부하지 아니한 者”로 하며, 同條同項第10號를 第
11號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10號 및 第12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
設한다.

10.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 기타 이익 또는 祝儀·賻儀金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한 者

12.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

第257條第1項第2號중 “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에서”를 “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第8項에서”로 한다.

第258條第2項第1號중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第2項,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 내지 第3項,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4項”으로 한다.

第266條第1號중 “第13條”를 “第12條”로 한다.

第271條第1項중 “類似機關”을 “類似機關·私組織”으로 한다.

第272條第4項중 “第207條(緊急拘束과 令狀發付期間)의”를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의”로 한다.

第27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第18條(選舉權이 없는 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犯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候補者와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및 選舉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調査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調査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 질문·調査·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疏明節次·방법, 證票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8條의2 및 第82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選舉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舉期間開始日전 10日까지 選舉放送審議委員會 및 大統領選舉放送討論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新 · 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8條 (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p> <p>放送 · 新聞 · 通信 · 雜誌 기타의 刊行물을 經營 · 관리하거나 編 輯 · 取材 · 執筆 · 報道하는 者가 政黨의 政綱 · 정책이나 候補者 의 政見에 關하여 報道 · 論評을 하는 경우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 여하게 하여 對談을 하거나 討 論을 행하고 이를 放送 · 報道하 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p> <p><新 設></p>	<p>第8條(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p> <p>-----</p> <p>-----</p> <p>-----</p> <p>----- 候補者</p> <p>(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p> <p>放送法 第11條(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 員會”라 한다)는 選舉放送的 公 正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選舉日 전 120日까지 選舉放送審議委員 會를 設置하여야 한다.</p>

②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 [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放送學界· 大韓辯護士會· 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的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權利救濟 기타 選舉放送的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⑤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的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

고, 조사결과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是正 및 制裁措置를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是正 및 制裁措置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候補者 및 候補자가 되고자 하는 者は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

⑦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 設>

第8條의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전 90
日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에 의하
여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
曲宣傳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
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
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
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
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
論報道的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
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
時間이내에 無料로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
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 부터 48時間이내에 이를 審議· 決定하여야 한다.

④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8條의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選舉日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 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 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 報道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 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 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の 登録등에 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 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 時間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の 登録등에 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條 (任期開始) ①大統領의 任期는 前任大統領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者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舉와 闕位로 인한 選舉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된다.

<新 設>

② ~ ③ (생략)

第18條(選舉권이 없는 者) ①~

② (생략)

③第2項의 選舉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은 選舉犯으로 본다.

第14條(任期開始) ① (現行과 같음)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이미 後任大統領의 選舉가 실시되어 當選人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當選人의 任期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부터 開始된다.

③~④ (現行 第2項 및 第3項과 같음)

第18條(選舉권이 없는 者) ①~

② (現行과 같음)

③第2項의 選舉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 (競合犯과處罰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第38條 (不在者申告) ①~② (생략) 第38條(不在者申告) ①~② (現行과 같음)

③居所에서 投票할 수 있는 者 (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는 第1項第2號의 者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艦艇에 근무하는 者·第1項第3號의 病院·療養所에 長期寄居하는 者중 거동할 수 없는 者와 第1項第4號에 規定된 身體障礙者에 한하되, 第1項第2號의 者는 所屬機關의 長의, 第1項第3號의 者는 病院 또는 療養所의 長의, 第1項第4號의 者는 統·里 또는 班의 長의 확인을 不在者申告書의 해당 欄에 받아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3號의 者중 病院·療養所에 長期寄居하는 者로서 거동할 수 없는 者나 不在者投票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長期寄居하는 者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와

第1項第3號의 者는 病院 또는 療養所등의 長의,

④~⑦ (생략) ④~⑦ (現行과 같음)

第53條 (公務員등의 立候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舉日전 90日(全國區國會議員選) 第53條 (公務員등의 立候補) ①-----

地方議會議員이

學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 만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② (생략)

第56條 (寄託金) 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시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金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1. 大統領選舉는 3億원

2 ~ 5. (생략)

② ~ ③ (생략)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舉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選舉日전 60日, 全國區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1. ~ 8.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第56條 (寄託金) ①-----

1. ----- 5億원

2. ~ 5. (現行과 같음)

② ~ ③ (現行과 같음)

第66條 (小型印刷物) ①(본문생략)

1. 大統領選舉

傳單型 小型印刷物 2種이내와

名啣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型印刷物 各 1種

2. ~ 3. (생략)

② (생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小
型印刷物의 數量은 종류별로 各

各 大統領選舉에 있어서의 傳單

型 小型印刷物 및 名啣型 小型

印刷物과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舉(比例代表市·

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에 있어

서의 名啣型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舉區안의 選舉權者數의 2倍數

에 相當하는 數이내로, 大統領

選舉·地域區國會議員選舉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있어

서의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당해

第66條(小型印刷物) ① (現行

과 같음)

1. 大統領選舉

傳單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型印刷物 各 1種

2. ~ 3.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③-----

-----數量은 名啣型

小型印刷物은-----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選舉區안의 世帶數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數를 합한 數에 相當하는 數이내로 한다.

④~⑤(생략)

⑥小型印刷物の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大統領選舉

候補者が 배부하되, 小型印刷物を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각 2部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數이내
로,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舉區안의 世帶數에 相當하는 數이내로 한다.

④~⑤ (現行과 같음)

⑥-----

1. 大統領選舉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자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日[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인과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

되,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12일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投票案内文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選舉人名簿 확정결과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이를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地方
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

2.-----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책
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登錄 마감일후 3일까
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舉管
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제
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郵
便으로 발송하되, 第65條(選舉
公報)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
舉公報(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인에 대하여는
不在者投票用紙를 포함한다)
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管轄
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
가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일까
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舉管
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管
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마
감일후 3일까지 郵便으로 발

송하며, 名啣型 小型印刷物の 배부에 있어서는 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⑧ (생략)

⑨第64條(宣傳壁報)第2項 後段 내지 第7項의 規定은 책자형 小型印刷物(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한한다)에 이를 準用하고, 같은 條 第7項의 規定은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책자형 小型印刷物(大統領選舉에 한한다) 및 名啣型 小型印刷物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는 "책자형 小型印刷物"로, "規格을 넘거나

-----名啣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배부하되, 選舉區選舉 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管轄하는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에 각 2部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는 第1項·第2 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 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⑧ (現行과 같음)

⑨----- 책자형 小 型印刷物과 傳單型 小型印刷物 에----- 名啣型 小型 印刷物에----- "책자형 小型印刷物 및 傳單型 小型印刷

미달하는"은 "規格을 넘는"으로,
"칩부"는 "발송"으로, "칩부하지
아니할 地域"은 "발송하지 아니
할 대상 및 地域"으로 본다. 다
만, 같은 條 第7項의 "宣傳壁報"
는 "傳單型 小型印刷物·名啣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型印刷
物"로 본다.

⑩ (생 략)

第67條 (懸垂幕) ①候補者(大統領
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
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는 選
舉運動을 위한 懸垂幕을 제작하
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
會의 檢印을 받아 게시할 수 있
되, 그 數量은 다음 各號에 의
한다.

<新 設>

物"-----

⑩ (現行과 같음)

第67條(懸垂幕) ①-----

-----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 大統領選舉

區·市·郡(하나의 區·市·
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
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
區를 말한다)마다 3枚이내

1. 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의 邑·面·洞數의
2分の 1에 상당하는 數이내

2. ~ 4. (생략)

② (생략)

<新設>

③ (생략)

2. 市·道知事選舉

3. ~ 5. (現行 第2號 내지 第4號와 같음)

② (現行과 같음)

③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懸
垂幕의 製作·揭示費用은 당해
候補者가 부담하되, 候補者가
第57條(寄託金の 반환등)第1項
에 해당되는 때에는 國家가 第
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
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
用의 범위안에서 選舉日후 補填
한다.

④ (現行 第3項과 같음)

第68條 (標札·手旗등) ①大統領

選舉에 있어서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누구든지 第77條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의 演說會場에서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등을 게재한 標識板·標札·手旗 또는 마스코트를 붙이거나 입거나 지닐 수 있다.

②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候補者, 候補者의 配偶者,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舉事務員,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選舉運動期間중(演說員 및 對談·討論者는 당해 演說 또는 對談·討論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候補者의 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腕章·어깨띠 또는 標札을 두르거

第68條 (標札·手旗등) ① <削

除>

②候補者-----

----- 候補者의 사진·
姓名·記號 및 所屬政黨名(無所
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
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

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標識板·標札·手旗·腕章·
어깨띠 및 마스코트의 規格 기
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9條 (新聞廣告) ①選舉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
選舉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
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候補者登錄후 選舉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
에 필요한 사항을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
聞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
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회로 본다.

을 게재한 標識板·標札·手旗
·腕章·어깨띠·마스코트 기타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小品을 --

③第2項의-----

-----마스코트등의-----

第69條(新聞廣告) ①-----

-----政見, 政治資金募
金(大統領選舉에 한한다)-----

수 있되, 廣告時間은 1회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大統領選舉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20회이내

2. (생략)

②~④ (생략)

⑤第1項의 放送廣告는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과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 -----

----30회이내

2. (現行과 같음)

②~④ (생략)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廣告를 함에 있어서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 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申請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放送日時の 調整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大統領選舉

候補者と 候補者が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이내에 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7回이내

2.~5. (생략)

②~⑧ (생략)

⑨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は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⑩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의 費用(이하 "放送演說費用"이라 한다)은 당해 候補者(全國區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候補者가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第1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放

1. -----

---11回이내

2.~5. (現行과 같음)

②~⑧ (現行과 같음)

⑨-----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⑩-----

送演說費用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候補者가 행한 放送演說費用을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選舉日후 補填한다.

①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社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中繼放送하는 때에는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⑫ (생략)

第72條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그의 부

地方自治團體가 第122條(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費用의 범위안에
서 -----

①-----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
-----放送法에 의한-----

⑫ (現行과 같음)

第72條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綜合有線放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다음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
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등
의 放送演說외에 選舉運動期間
중 候補者(國會議員選舉에 있어
서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를,
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地
域區市·道議員候補者를 말한
다)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
여 候補者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選舉區(地域區國會
議員選舉와 地域區市·道議員選
舉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 單
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第73條 (經歷放送) ① (생략)

②第1項의 經歷放送 回數는 텔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大
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각 5회이

②~③ (現行과 같음)

第73條(經歷放送) ① (現行과 같
음)

②-----

----- 8회이

상으로, 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
·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각 2회이상으로, 市·道知事選
舉에 있어서는 각 3회이상으로
한다.

③~⑤ (생략)

第74條 (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

①韓國放送公社외의 放送施設
(放送법에 의한 放送局 및 綜合
有線放送법에 의한 綜合有線放
送局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
가 그의 부담으로 候補者의 經
歷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제
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選舉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
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상으로, -----

③~⑤ (現行과 같음)

第74條 (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

①-----

-----綜合有線放
送局·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
業을-----

② (現行과 같음)

第75條（合同演說會） ①～③（생

략)

④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合同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告知放 送을 하여야 하며, 演說會 1회에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200枚이내의,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100枚이내의, 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50枚이내의 壁報를 작성·첩부하여야 하되, 그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이 경우 第64條(宣傳壁報)第8項의 規定은 合同演說會告知壁報의 첩부에 이를 準用한다.

⑤～⑦（생략）

第75條（合同演說會） ①～③（現

行과 같음）

④-----

⑤～⑦（現行과 같음）

第77條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 ①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運動期間중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을 위한 演說會를 개최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1回 5時間이내에서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3回이내

2. ~ 5. (생략)

② ~ ⑤ (생략)

第77條(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 ①-----

1. 大統領選舉

---5時間이내에서 市·道마다 2回이내와-----

-- 1回. 이 경우 公開施設에서의 屋內(천장이 있고 사면이 폐쇄된 場所를 말한다)集會에 한한다.

2. ~ 5. (現行과 같음)

② ~ ⑤ (現行과 같음)

⑥演說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者는 開催日前日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區·市·郡 또는 選舉區에 걸쳐 演說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최하는 區域名을 명시하여 開催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⑪演說會를 개최하는 者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演說會場의 標識를 하여야 하고, 확성기는 演說會를 개최하는 場所안에만 設置하여야 하며, 大統領選舉의 候補者가 演說을 하는 演說會場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

⑥-----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⑦~⑩ (現行과 같음)

⑪-----

-----標識와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宣傳物을 設置·게시할 수 있으며, 大統領選舉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별론 1개로 본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⑫演說會를 개최하는 者는 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200枚이내의,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100枚이내의, 第1項第3號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演說會 1회에 50枚이내의 告知壁報를 작성하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첨부할 수 있고,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 아울러 演說會의 告知를 함께 할 수 있으며, 告知壁報의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로 정한다. 이 경우 第2項 및

1개로 본다)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演說會를 개최하는 場所 밖에는 확성기와 錄音·錄畫器를 設置할 수 없다.

⑫-----

-----演說會 1회에 200枚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市·道마다
개최하는 演說會의 경우에는 區·
市·郡選舉連絡所마다 100枚)이내
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會
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하는
區·市·郡 또는 選舉區마다 각
각 演說會 1회에 첨부할 수 있
는 枚數의 告知壁報를 첨부할
수 있으며, 그 檢印은 開催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 또는 각각의 管轄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⑬ (생략)

第79條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
談) ①~② (생략)

③候補者등과 司會者는 公開場
所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자동
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候補者마다 1대·1組, 區·市

⑬ (現行과 같음)

第79條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
談) ①~② (現行과 같음)

③-----

1. -----

候補者와 區·市·郡選舉連絡

· 郡選舉連絡所마다 2대·2組

2. ~ 3.(생 략)

④ ~ ⑤ (생 략)

⑥자동차와 확장장치에는 中央
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부착하여야
하고, 管轄選舉管理委員會의 檢
인을 받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宣傳壁報 規格
의 2倍이내 크기의 候補者 사진
을 붙일 수 있다.

⑦~⑨ (생 략)

⑩候補者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腕章
· 標札 기타의 표시물을 두르거
나 지닐 수 있다.

所마다 각 1대·각1組

2. ~ 3 (現行과 같음)

④~⑤ (現行과 같음)

⑥-----

----- 第64條(宣傳壁報)의

⑦~⑨ (現行과 같음)

⑩-----
----- 錄音
器 또는 錄畫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黨歌等
政黨 또는 候補者를 홍보하는
내용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

⑪ (생략)

⑪ (現行과 같음)

⑫ 자동차·확성장치와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의 標識의 規格·기재사항 및 檢印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⑫-----

-----檢印, 錄畫器
-----의 規格 기타-----

第81條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候補者(全國區國會議員選舉와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對談·討論者(大統領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舉事務所 또는 選舉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第81條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와 對談者 또는 討論者-----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에 관한 司會者의 질문에 대하여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司會者를 통하여 參席者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⑦ (생략)

----政見 기타사항을-----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的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⑦ (現行과 같음)

⑧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書와 標識의 書式 및 公정한 개최를 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2條 (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 ①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定期刊行物の登録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社등 言論機關(이하 "言論機關"이라 한다)은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但書新設>

⑧-----
-----書式-----

第82條 (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 ①-----라디오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

-----政見 기타사항을-----

다만, 大統領選舉와 市・道知事選舉의 경우에는 第59條(選舉運動

②~④ (생략)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
 談·討論會) ①公營放送社(韓國
 放送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 및 그 法人이 出資한
 放送法人을 말한다)는 大統領選
 舉에 있어서 選舉期間중 中央選
 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節
 次에 따라 候補者의 일부 또는
 전부를 招請하여 所屬政黨의 政
 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등
 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放
 送을 이용한 對談·討論會를 개
 최하여 報道한다. 다만, 招請을
 승낙하지 아니한 候補者는 參席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期間)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舉
 日 전 120日부터 選舉期間開始日
 前日까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와 對談을 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②~④ (現行과 같음)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
 談·討論會) ①-----

 ----- 出資한

 ----- 말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중에서 1人 또는 數人을

 ----- 政見 기
 타사항을-----
 ----- 對談·討論會를 3
 회이상 개최하여 報道하여야 한
 다. <但書削除>

②第1項의 對談·討論會의 진행
은 공정하여야 한다.

③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
討論會)第7項과 第8項의 規定은
第1項의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②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
選舉日전 60日까지 大統領選舉
放送討論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討論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
여야 한다.

③討論委員會는 放送法人·放送
學界·大韓辯護士會·言論人團
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議席을 가진 政黨
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11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討論委員會의 委員을
추천하는 放送法人·放送學界·
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의 범
위와 추천절차등은 公營放送社
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④討論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新 設>

⑤討論委員會는 초청 候補者와
司會者·質問者의 선정, 對談·
討論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
정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進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新 設>

⑥公營放送社는 공동하여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開催日前일까지 中央選舉管理委
員會에 對談·討論會의 開催申
告를 하여야 한다.

<新 設>

⑦公營放送社가 아닌 放送社[第
70條(放送廣告)第1項의 放送施
設을 말한다]는 第1項의 對談·討
論會를 中繼放送할 수 있다.

<新 設>

⑧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
討論會)第2項·第6項 내지 第8
項의 規定은 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82條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運動) ①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選舉運動期間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揭示板·資料室등 情報貯藏裝置에 選舉運動을 위한 내용의 情報를 게시하여 選舉區民이 閱覽하게 하거나 對話房·討論室 등에 참여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揭示하여 이들을 誹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情報貯藏裝置에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各級選舉管理

委員會(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事業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요청을 받은 電氣通信事業者와 해당 개인용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所屬職員 또는 選舉區民에게
 教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
 고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の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7. (생략)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選舉日전 또는 選
 舉期間開始日전 一定期日부터
 금지되는 시기는 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말한다.

1.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
 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
 의 職名 또는 姓名을 밝히거
 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職員

1.-----

 ----- 候補者(候
 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
 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의-----

2. ~ 7. (現行과 같음)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舉期
 間開始日전 3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後段削除>

1. 地方自治團體의-----

또는 選舉區民에게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法습이 정하는
외의 金品 기타 이익을 주거
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

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舉區民을 대상
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
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 選
舉運動期間중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

지 中央黨 단위의 創黨大會·
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
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
政策發表會, 黨員研修·團合大
會등 일체의 政治行事に 참석
하거나 選舉對策機構, 選舉事
務所, 選舉連絡所를 방문하는

2. 所屬政黨의

3. 創黨大會

행위.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候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60日)부터 選舉日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敎養講座(地方自治團體의 職業輔導 敎育은 제외한다), 事業說明會, 公聽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新 設>

候補者가 되는 경우와 黨員으로서 所屬政黨이 黨員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政黨의 地區黨 단위 이상의 公開行事에 儀禮的으로 방문하는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敎養講座 事業說明會, 公聽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가. 法令·條例에 근거한 地方自治團體 본연의 職務遂行을 위한 행위

<新 設>

나. 特定日·特定時期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新 設>

다. 天災·地變 기타 災害의 救
護·復舊를 위한 행위

<新 設>

라. 職業輔導教育 또는 有償으
로 실시하는 教養講座를 개최·
後援하는 행위

<新 設>

마.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행위

<新 設>

바. 가目 내지 마目に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5. 選舉期間開始日전 30日(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에 候
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60日)부
터 選舉日까지 統·里長會議
에 참석하는 행위

5. 統·里·班長의 會議에 참석하
는 행위. 다만, 天災·地變 기타
災害가 있거나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7條 (團體의 選舉運動禁止) 團體는 社團·財團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選舉期間중에 그 名義 또는 그 代表者의 名義로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反對하거나 支持·反對할 것을 勸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事務所 또는 選舉連絡所외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選舉推進委員會·後援會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機關·團體 또는 施設을 設立하거나 設置할 수 없다. 다만, 政黨의 中央黨·黨支部 또는 地區黨의 事務所에 設置되는 각 1개의 選舉對策機構와 政治資金

第87條(團體의 選舉運動禁止) ---

-----代表의-----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

-----後援會·휴게소 또는 研究所-----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設立 또는-----黨支部·地區
-----黨 또는 區·市·郡黨連絡所의-----

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政黨이나 候補者가 設立·운
영하는 機關·團體 또는 施設은
選舉日前 180日(補闕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당
해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
立이나 活動내용을 選舉區民에
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
補者의 名義나 그 名義를 類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壁報·懸
垂幕·放送·新聞·通信·雜誌
또는 印刷物을 이용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다.
다만,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6
條의5(集會에 의한 募金) 또는
같은 法 第6條의6(廣告에 의한
募金)의 規定에 의한 集會와 廣
告에 의한 募金을 위한 告知와
廣告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第6
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
한 募金)-----

<新 設>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한 選

舉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
舉에 있어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研究所·同友會·鄉友會
·山岳會·早起蹴球會, 政黨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
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私組織
기타 團體를 設立하거나 設置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選舉運動이외의
목적으로 設立되거나 設置된
團體 기타의 組織이나 그 構
成員에게 選舉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金品·饗應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이
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
며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
거나 하게 할 수 없다.

第91條 (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 ①~③ (생략)

④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경우외에 관계

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및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

印刷物을 다음 各號에 의한 數

이내의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

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

다.

1. ~ 4. (생략)

第93條 (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舉日전 180日(補闕

選舉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

舉日까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

第91條 (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 ①~③ (現行과 같음)

④-----

-----다음

各號에 의한 數이내에서 管轄選

舉管理委員會가 교부한 標識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第64條

(宣傳壁報)의 -----

-----부착하여-----

1. ~ 4. (現行과 같음)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

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第105條 (行列등의 금지) (생략)

<新設>

第105條 (行列등의 금지) ① (現

行과 같음)

②누구든지 第68條(標札·手旗 등)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第108條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①누구든지 選舉期間開始日부터 選舉日의 投票마감시까지 選舉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豫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② (생략)

<新設>

第108條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

①-----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② (現行과 같음)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查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의 전체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新 設>

④누구든지 選舉에 관한 輿論調查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頼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舉에 관한 輿論調查를 실시한 機關·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輿論調查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舉의 選舉日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第109條 (電報의 사용금지등) ①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이 法の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權者에게 電報나 모사전송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한 選舉運動의 금지) ①-----選舉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電話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自筆書信(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第110條 (候補者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が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身分·經歷·人格·財産·행위 또는 그 所屬政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陳述하거나 流布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摘示하여 개인의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但書新設>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② ~ ③ (現行과 같음)

第110條 (候補者등의 誹謗禁止)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行爲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行해지는 場所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儀禮的인 金額범위안에서 祝儀金品 또는 賻儀金品을 제공하는 行爲

2. 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區·市·郡黨連絡所의 黨部의 黨舍를 訪問하는 者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茶菓 또는 飲料(酒類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行爲.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안에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 ① (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行爲 또는 통상적인 政黨活動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行해지는 場所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儀禮的인 金額범위안에서 祝儀金品 또는 賻儀金品을 제공하는 行爲

2. 獎學財團 또는 獎學基金이 選舉日 2年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獎學金을 지급하는 行爲. 다만,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獎學金의 金額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行爲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

서 제공하는 茶菓 또는 飲料
라 함은 일상적인 禮를 갖추
는데 필요한 정도로 現場에
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記念品 또는 膳
物등을 제외한다.

3.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상
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
活動報告會등 集會에서 통상
적인 범위안에서 茶菓·떡
또는 飲料(酒類를 제외한다)
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第2號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
다.

4. 獎學財團 또는 獎學基金이
選舉日 2年이전부터 정기적으
로 지급하여 온 獎學金을 지
급하는 행위. 다만, 寄附行爲
制限期間중에 獎學金의 금액

서 같다)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히거나 候補者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
와 告知의 제한)第1項의 規
定에 의한 創黨大會등과 第
141條(黨員團合大會의 제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
會 및 黨員教育 기타 所屬黨
員만을 對象으로 하는 黨員
集會에서 參席黨員등에게 政
黨의 經費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행위
(膳物이나 記念品을 제외한
다)

가. 教材 기타 政黨의 弘報印
刷物을 제공하는 행위

나. 싼 값의 政黨의 배지나 상
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
위

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히거나 候補者나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推定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候補者가 選舉運動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者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食事·茶菓·떡 또는 飲料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候補者와 함께 다니는 者 및 통상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6.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에 있어 그 開催場所가 大衆交通手段이 없거나 交通이 불편한 場所로서 移動을 위하여 參席黨員에게 交通便利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다과·떡·김밥·음료(酒類를 제외한다)등 다과류의 飮食物(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 接待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 또는 政黨의 區·市·郡黨連絡所이상의 黨部の 事務所를 訪問하는 者

나.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

務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議政活動報告會등 集會에 참
석한 者

다. 第1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黨員集會에 참석한 所
屬黨員

라.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
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者會議와 地區黨의
代表者가 개최하는 黨職者
會議(區·市·郡黨連絡所의 部
長級이상의 幹部와 邑·面·洞
의 男·女責任者級 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
한다)에 참석한 黨職者

5.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에게
食事類의 飲食物(溫泉場·觀
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서의 接待를 제외한
다)을 제공하는 행위

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
者와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
다.

나. 政黨의 地區黨代表者(候
補者를 제외한다)가 管轄
區域안의 地域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者. 이
경우 함께 다니는 者의 범
위에 관하여는 中央選舉管
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黨大會등에 參席한
黨員과 來賓. 이 경우 酒
類는 제외한다.

라.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6
條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
에 의한 募金)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金品募集

을 위한 集會를 개최한 때
에 그 集會에 참석하여 金
品을 기부한 者. 다만,
選舉期間중에는 다과류의
飲食物에 한한다.

6. 政黨의 中央黨이 第142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黨職
者會議 參席對象者와 有給事
務職員을 대상으로 행하는
黨員教育에서 政黨의 經費로
參席黨員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宿食 또는 實費의 旅
費나 交通便宜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상
의 행위 또는 救護的·慈善
的 행위나 통상적인 政黨活
動으로서 中央選舉管理委員
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新 設>

③ (생 략)

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
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第3項의 寄附行爲制限期間이
시작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
라 寄附行爲制限의 主體·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③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飲食物”이라
함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禮를 갖추는데 필요
한 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
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記念品 또는 膳物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現行 第3項과 같음)

⑤-----

第4項의-----

<新 設>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등의

상시제한) ①國會議員·地方議
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政
黨의 地區黨 代表者·候補者(候
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
한다) 및 그 配偶者는 選舉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選
舉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
·施設 또는 당해 選舉區의 밖
에 있더라도 그 選舉區民과 연
고가 있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1. 野遊會·관광모임·체육대회
·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 金品
기타 利益을 제공하는 행위

2. 冠婚喪祭儀式 기타 慶弔事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祝儀
·賻儀金品을 제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第1項의 행위를 약

속·지시·勸誘·斡旋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親族, 政黨의 黨職者등 특정대상과 金額범위안에서의 행위와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0條 (選舉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이를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舉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6. (생략)
- 7.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함이 없이 특정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電信料·自筆書信郵送料등의 費用

第120條 (選舉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 1. ~ 6. (現行과 같음)
- 7. -----

-----電信料등의-----

8.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制限기간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儀禮的이거나 職務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다만, 같은條같은項第2號 및 第5號의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을 제외한다.

9. (생략)

第129條 (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② (생략)

<新設>

8. -----

----- 같은條 같은項 第4號 가目 및 第5號 가目的-----

9. (現行과 같음)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② (現行과 같음)

③會計責任者는 自動車(選舉運動用自動車를 말한다), 擴聲裝置, 印刷物, 施設物 기타 裝備·物品을 選舉運動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싸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去來價格 또는 賃借價格에 상당하는 價額을 選舉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填對象이 되는 印刷物·施設物

③第1項의 會計帳簿의 종류·規格과 그 기재방법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5條 (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①~② (생략)

③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實費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手當·實費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勸誘·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新 設>

기타 物品에 대하여는 第122條 (選舉費用制限額등의 公告)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金額을 그 價額으로 본다.

④-----
그 기재방법 및 第3項 前段의 價額算定方法은-----

第135條 (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①~② (現行과 같음)

③-----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補償등 명목여하를-----

④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事務關係者에게 手當·實費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事務長등이 지정한 金

사용할 口號・圖案・정책 기타
選舉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舉期間중에
는 이를 할 수 없다.

1.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選
舉日 전 120日부터 選舉期間開
始日 前日 까지 日刊新聞등에
總 80回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舉

・再選舉[第197條(選舉의 一部
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規定
에 의한 再選舉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延期
된 選舉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選舉期間開始日 前日 까지
日刊新聞등에 總 30回이내

3. (생략)

②~③ (생략)

1. -----

---50回이내

2. -----

----- 20回이내

3. (現行과 같음)

②~③ (現行과 같음)

第138條 (政綱·政策弘報物の 배부제한등) ①政黨이 選舉期間중 제작하여 候補者를 추천한 選舉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 政綱·政策弘報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하되, 傳單型 政綱·政策弘報物 및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각 2種이내

2.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地域

區市·道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舉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하되,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할 수 있는 數量은 종류별로 候補者를 추천한 選舉區의 所屬黨員에 상당하는 數를 넘지 못한다.

③~⑤ (생략)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の 배부제한등) ①政黨이 選舉期間중에 候補者를 추천한 選舉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 政綱·政策弘報物은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한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으로 한다.

②-----

數量은-----

③~⑤ (現行과 같음)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
知的 제한) ①~② (생 략)

③寄附行爲制限期間중 第1項의
創黨大會등에서 政黨의 經費로
제공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行위는 第112條(寄附行
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1項
의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參席黨員과 來賓에게 통상적
인 범위안에서 食事·茶菓
·떡·飲料(酒類제공등 響應을
제외한다) 또는 教材 기타 政
黨의 弘報物(膳物이나 記念
품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第112條第2項
第2號 後段의 規定은 이를 準
用한다.

2. 創黨大會등의 場所가 大衆交
通手段이 없거나 交通이 불
편한 場所로써 부득이한 경우
參席黨員에게 交通便利를 제
공하는 행위

3. 싼 값의 政黨의 배지나 상징
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④ (생 략)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
知的 제한) ①~②(現行과 같
음)

<削 除>

④(現行과 같음)

第141條(黨員團合大會의 제한) ①

~ ③ (생략)

④ 第2項의 黨員集會에서 參席 黨員만을 대상으로 하여 政黨의 經費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茶菓·떡·飲料(酒類제공등 饗應을 제외한다) 또는 教材 기타 政黨의 弘報物(膳物이나 記念品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1項의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第112條第2項第2號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에의 招待와 饗應이 부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1條(黨員團合大會의 제한) ①

~ ③ (現行과 같음)

<削 除>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 ①

~② (생략)

③寄附行爲制限期間중 政黨이 개최하는 擴大黨職者會議와 地區黨의 代表者가 개최하는 黨職者會議(區·市·郡黨連絡所의 部長級이상의 幹部와 邑·面·洞의 男·女責任者級이상의 幹部가 참석하는 會議를 말한다)에서 參席黨職者만을 대상으로 政黨의 經費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茶菓·떡·김밥·飲料(酒類提供등 響應을 제외한다) 또는 教材 기타 政黨의 弘報物(膳物이나 記念品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第112條(寄附行爲의 定義 및 제한기간등)第1項의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第142條(黨職者會議의 제한) ①

~② (現行과 같음)

<削除>

第112條第2項第2號 後段을 準
用한다. 다만, 溫泉場·觀光地
또는 遊興施設을 갖춘 場所등
에의 招待와 響應이 부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政黨의 地區黨代表者가 寄
附行爲制限期間중 管轄區域안
의 地域을 訪問하는 때에 함
께 다니는 者에게 통상적인 범
위안에서 食事·茶菓·떡 또는
飲料를 제공하는 행위는 第112
條第1項의 寄附行爲로 보지 아
니한다.

⑤ 第2項의 擴大黨職者會議의
申告書式과 第4項의 地區黨代
表者와 함께 다니는 者 및 통
상적인 범위안에서의 제공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削 除〉

⑤-----
申告書式과 기타 필요한 사항
은-----

第150條 (投票用紙) ①~③ (생략)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사이의 掲載順位는 國會에서의 多數議席順으로 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사이의 掲載順位는 그 所屬政黨의 명칭의 가, 나, 다順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사이의 掲載順位는 候補者姓名의 가, 나, 다順에 의한다.

<後段新設>

第150條 (投票用紙의 候補者の 掲載順位등) ①~③ (現行과 같음)

④-----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 및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와 동시에 실시하는 選舉에 있어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の 경우에는 多數議席順에 의하여 中央

學公報와 第66條(小型印刷物)第

6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

형 小型印刷物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

된 者가 그 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參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⑤ (생 략)

第230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1. ~3. (생 략)

4.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

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名목여하를 불문하고 選

舉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約束·지시·勸誘·알선 또는

요구한 者

5. (생 략)

②~⑤ (생 략)

-----第66條(小型印刷物)第6

項의-----

②~⑤ (現行과 같음)

第230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1. ~ 3. (現行과 같음)

4. -----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補償등

名목여하를-----

5. (現行과 같음)

②~⑤ (現行과 같음)

第240條 (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한 妨害罪) ①~② (생략)

③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舉公報)의 選舉公報·

第66條(小型印刷物)의 傳單型

小型印刷物(大統領選舉를 제외

한다)이나 책자형 小型印刷物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地方

自治團體의 長選舉에 한한다)·

第75條(合同演說會)의 告知放送

이나 告知壁報 또는 第153條(投

票案内文의 발송)의 投票案内文

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

·방송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0條 (壁報 기타 宣傳施設등에

대한 妨害罪) ①~② (現行과

같음)

③-----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小型印

刷物-----

第255條 (不正選舉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1. ~ 7. (생략)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에서 準
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
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9. ~ 12. (생략)

13.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
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
하여 類似機關을 設立하거나
設置한 者

<新 設>

第255條 (不正選舉運動罪) ①---

1. ~ 7. (現行과 같음)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討論會)第4項 및 第
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
談·討論會)第8項에서

9. ~ 12. (現行과 같음)

13. -----

----- 設立·設置하
거나 기존의 機關·團體·組
織 또는 施設을 이용한 者

14. 第89條의2(私組織등을 이용
한 選舉運動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組織 기
타 團體를 設立·設置한 者,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위

14. (생략)

15. 第105條(行列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16.~17. (생략)

18. 第109條(電報의 사용금지등)

第1項 本文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의 방

반하여 金品・響應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者 또는 당해 團體나 組織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15. (現行 第14號와 같음)

16. 第105條(行列등의 금지)第1

項의-----

-----者, 같은 條 第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

대하여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

게 한 者

17. ~18 (現行 第16號 및 第17號와 같음)

19. 第109條(書信・電報등에 의

한 選舉運動의 금지)第1項---

-----書信・電報

법을 이용하여 選舉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나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脅迫하거나 하게 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第68條(標札·手旗등)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旗등을 選舉運動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3. ~ 4. (생략)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畫의 배부·게시등 금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畫등을 배부·칩부·살포·게시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를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 證明書·文書 기타

· 모사전송·電話 기타 電氣 通信의-----

②-----

1. (現行과 같음)

2. 第68條(標札·手旗등)第2項의-----

3. ~ 4. (現行과 같음)

5. -----
-----게시·상영하거나-----

<新 設>

다. (생략)

<新 設>

라. ~ 차. (생략)

카.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등)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의 경위와 그 結果를 公表 또는 인용하여 報道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 第2項의 規定

다.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 또는 候補者를 弘報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라. (現行 다목과 같음)

마. 第82條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選舉運動)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바. ~ 타 (現行 라목 내지 차목과 같음)

파. -----

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거나 하게 한 者

타.(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5. 第64條(宣傳壁報)第7項·第65條(選舉公報)第4項(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第66條(小型印刷物)第9項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의 結果를 公表 또는 報道하거나 하거나 하게 한 者와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舉의 選舉日후 6月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者

하. (現行 타目과 같음)

2.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③-----

1. ~ 4. (現行과 같음)

5. -----

(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壁報·選舉公報나 小型印刷物의 數量을 넘게 印刷하여 제공한 者 또는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第1號 本文(같은 條 같은 項 第2號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小型印刷物을 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6. ~ 8. (생략)

9. 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者

<新 設>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啣型 小型印刷物을-----

6. ~ 8. (現行과 같음)

9. -----

----아니하거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첩부하지 아니한 者

10.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 등의 상시제한)의 規定에 위

10. (생략)

<新設>

第257條 (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第81條(候補者등 초청 對談· 討論會)第6項[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 討論會)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④ (생략)

반하여 金品 기타 利益 또는 祝儀· 賻儀金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지시· 勸誘· 斡旋 또는 요구한 者

11. (現行 第10號와 같음)

12.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 등)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 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

第257條 (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①-----

1. (現行과 같음)

2. -----
-----第82條(言論機關 초청 對談· 討論會)第4項 및 第82條의2(公營放送 텔레비전 對談· 討論會)第8項에서-----

②~④ (現行과 같음)

第258條 (選舉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 (생 략)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政黨·候補者 또는 會計責任者가 第124條(會計責任者の 職務開始)·第127條(選舉費用의 收入·支出) 내지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第2項,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또는 第136條(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생 략)

第266條 (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5條(不正

第258條 (選舉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 (현행과 같음)

②-----

1. -----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 내지 第3項,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4項-----

2. (現行과 같음)

第266條 (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

選舉運動罪)·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第1項 및 第2項·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違反罪) 내지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의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1. 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 [같은 條 같은 項 第5號의 경우 각 組合의 組合長 및 醫療保險法 第13條(保險者)第1項중 地域醫療保險組合의 常任 代

1. -----

表理事・職員과 같은 法 第27
條(醫療保險聯合會)의 醫療保
險聯合會의 常任 任・職員을
포함한다]

2. ~ 5. (생략)
第271條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
치 및 代執行) ①各級選舉管理
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
되는 選舉에 관한 壁報・印刷物
・懸垂幕 기타 宣傳物(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
나 類似機關 또는 施設등을 발
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
鎖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執行은 行政代執行法
에 의하되, 그 節次는 行政代執
行法 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 ~ 5. (現行과 같음)
第271條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
치 및 代執行) ①-----

----類似機關・私組織-----

②~③ (現行과 같음)

第272條 (不法宣傳物の 郵送中止)

①~③ (생략)

④第3項의 경우 搜查機關은 刑事
訴訟法 第207條(緊急拘束과 令
狀發付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郵
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 발부여
부를 당해 選舉管理委員會 및 郵
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の 郵送中止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 (생략)

<新設>

第272條 (不法宣傳物の 郵送中止)

①~③ (現行과 같음)

④-----
-----第200條의4(緊急逮捕
와 令狀請求期間)의-----

⑤ (現行과 같음)

第272條의2(選舉犯罪의 調査등)

①各級選舉管理委員會(投票區選
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第18條(選舉권이 없는 者)第2項
의 規定에 의한 選舉犯에 관하
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
정되거나, 候補者와 選舉事務長
· 選舉連絡所長 및 選舉事務員

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理由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인에 대하여 질문·調查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查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調查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 질문·調查·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關係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疏明節次·방법, 證票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